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 중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p> <p>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p> <p>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p> <p>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 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⑥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 중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p> <p>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p> <p>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p> <p>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 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u><삭제></u></p> <p>⑥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 지원대상예외기준 정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4조(기타 사항) ① 금융기관은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은 대출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기타 사항) 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대상 대출금리에 대해 한국은행 지원에 따른 금리감면폭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지구 수정</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3. 3. 28.)</p> <p>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3년 6월 첫 영업일로 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 명시</p> <p>- 경과조치 마련</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	---	---	---	---	---

<별표2>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별표2>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u>71101 변호사업</u> <u>71102 변리사업</u> <u>71201 공인회계사업</u> <u>71202 세무사업</u>
보건업	<u>861 병원</u> <u>862 의원</u>

- 배정 제외업종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변동전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비고
기관코드	각행관리번호 ¹⁾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자금구분	취급점포명	변동전잔액	변동일련번호 ²⁾	변동사유 ³⁾	변동사유발생일 ⁴⁾	변동처리일 ⁵⁾	변동금액	변동후잔액		

-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휴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휴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입(예: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변동전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비고
기관코드	각행관리번호 ¹⁾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자금구분	취급점포명	변동전잔액	변동일련번호 ²⁾	변동사유 ³⁾	변동사유발생일 ⁴⁾	변동처리일 ⁵⁾	변동금액	변동후잔액		

-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입(예: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 변동사유 항목 변경